

「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건축법 개정(일조 높이제한 관련) 반영(안 제86조제1항, 제2항, 제6항, 제7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일조 높이 제한 규정이 건축법으로 상향 입법되고, 적용제외 대상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(일조높이제한 규정 삭제)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삭제
- (적용예외 조문 변경)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 일조높이제한 적용제외 대상을 개정된 건축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으로 인용 조문 변경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정비로 혼선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제외(안 제119조제1항제4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다세대주택 기준 완화에 따른 밀도 증가로 주민공동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도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공급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 건축기준 합리화(안 [별표1] 제1호, 제2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다세대주택·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 및 층수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 도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다세대·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을 상향(660㎡이하 →1,000㎡미만)하고,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상향(3개층 이하→4개층 이하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다세대주택·다가구주택의 규제 합리화로 주택공급 활성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